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실용적 가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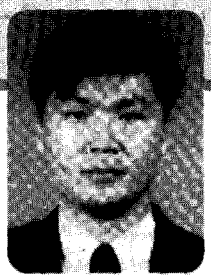

정 연 용
특허청 서기관

목 차

Ⅰ. 부당이득의 형태와 연혁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Ⅳ. 불법원인 급여
Ⅴ. 무체재산권과 부당이득
Ⅵ. 결론

〈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

Ⅱ.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의 關係

1. 契約上 履行請求權과의 關係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그것에 의해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지체가 된 후, 채무자가 급부의 목적물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미 이행을 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가 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이 때는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있기 때문이며, 다른 이행청구권이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契約終了後의 目的物返還請求權과의 關係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에 당사자 일방이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당사자 일방이 얻은 이득의 반환청구에 관해서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22].

3. 物權的 請求權과의 關係

이들 양 청구권의 경합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독일의 다수설에 의하면 상대방이 점유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며,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한다는 견해가 과거에 있었다.

競合否定說(이은영)은 두 청구권간의 경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로서, 매매 · 증여 등 채권행위의 무효 · 취소의 경우에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민법 제747조에 의하여 인정하면 채권행위인 원인행위가 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이므로,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맥을 같이하여 원인행위인 매매와 같은 채권계약이 무효 · 취소 · 해제 등으로 실효하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그러나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인행위가 실효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무효 · 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으로 있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에는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23].

이와는 달리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하여 인정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실효하게 될 경우, 물권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예컨대, 매매계약이 무효 · 취소 · 해제 등으로 실효하면,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는 일이 없게 되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과연 본권의 취득여부를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한편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는 물권행위의 무인론을 취하느냐 유인론을 취하느냐에 무관하게 이득자가 얻은 이득을 원물로 반환청구할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고, 가액으로 반환청구할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24].

다른 견해는 법률행위 특히 원인행위의 무효 · 취소의 경우에 손실자의 이득자에 대한 이득의 반환은

22) '…손해배상(기) [공1993,1565]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 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경합관계)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대판 1993. 4.27, 92다56087)
'…법률행위가사기에의한것으로취소의대상이됨과동시에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관계(= 경합관계)및중첩적행사의가부(소극)에 대해서, 법원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 (대판1993.4.27, 92다56087)

23)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지만,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와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 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 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 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상태에 이른다…' (대판1997.11.11, 97다36965, 36972)

24) 곽윤직, 앞의 책, 609-912면.

그 이득이 원물이든, 가액이든 무관하게 언제나 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문제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고, 오직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의 침해로 인한 물권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로지 물권적 청구권만이 발생할 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경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적용법조항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는 민법제747조 이하이고,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할 때는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라고 한다.

결국, 물권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에 따라서 이득의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은 조정해야 하며,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원물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그 본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과의 關係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에 대해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양 제도의 제도적인 취지가 다르므로 두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여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 손실자인 토지소유자는 경작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든 모든 가능하다[25].

Ⅲ. 不當利得의 成立要件

1. 統一說에 의한 成立要件

종래의 설인 통일설 즉 공평설에 의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은 다음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자이 이득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한다. 첫째로 이득자가 이득을 얻었을 것, 둘째로 손실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것, 셋째로 이득자의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넷째로 이득자가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득은 이득자의 재산의 적극적인 증가는 물론 소극적인 증가도 포함하며, 손실 또한 손실자의 적극적인 손실은 물론 증가되어야 할 재산의 증가가 없는 소극적인 손실도 포함한다. 이들 이득과 손실의 인과관계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로서 충분하지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손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득자가 이득을 얻는 것이 공평 내지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경우를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와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그 각각의 경우에 구체적인 법률상 원인없는 사유를 나열한다[26]. 참고적으로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근거여부가 중요하다[27].

---

25) 대판 1993. 4. 27, 92다 56087.

26) 곽윤직, 앞의 책, 623-630면.

27) 중국(중화인민공화국) 民法通則 제5장 民事權利 제2절 債權[제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취득한 부당한 이익을 손해 받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참고적으로 부당이득보다는 불법행위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민법통칙 제6장 民事責任 제3절 侵權의 民事責任에서의 행위를 들 수 있다. [제129조] 긴급피난으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만약 위험이 자연적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긴급피난 한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당한 민사 책임을 진다. 긴급피난으로 인해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필요 한도를 초과한 것이, 없어야 될 손해를 초래한 것은 긴급피난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非統一說에 의한 成立要件

非統一說에 따름			
급부에 의한 給付不當利得. (Leistungskondiktion)	급부 이외의 원인에 의한 非給付不當利得(Nichtleistungskondiktion)		
	侵害不當利得 (Eingriffskondiktion)	費用不當利得(Verwendungskondiktion)	求償不當利得(Ruckgriffskondiktion)

Ⅳ. 不法原因 給與

1. 不法原因 給與의 意義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스스로 급여하였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관계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한다. 그러나 타인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와 같이 원인을 불법으로 한 것으로 하는 이유가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손실자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고도 보호를 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득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제746조 단서) 불법에는 강행법규위반, 불륜한 행위, 사행행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폭리행위가 포함된다.

2. 立法 趣旨

도박계약에 의하여 급부한 자의 반환청구권을 거부하는 이유는 비난받을 행위를 한 자가 이것을 이유로 하여 자기의 손실을 반환받기 위하여 법의 구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비난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륜한 남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부한 금전 기타 이득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할 수 없고, 다만 불륜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급부한 금전 기타 수수는 그 자체 유효하여 부당이득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103조가 도박계약과 같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뜻을 명문하고 있는 것은 이 행위가 사회의 사상에 반하므로 법률이 그 실현에 조력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거절하는 것과는 달리, 제746조는 이미 행해진 반사회적인 행위에 기인하는 급부의 구제를 자업자득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즉 양자는 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적극과 소극의 차이라고 하나, 서로 표리일체로 반사회적인 행위한 관여한 자들에게 일체의 법률상 구제를 거부하는 법리를 정한 것이다[28].

이와 같이 제746조는 반사회적인 위법한 행위의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구제를 부정하여 위법행위를 억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라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29].

3. 不法原因 給與의 成立要件[30]

Ⅴ. 無體財産權과 不當利得

1. 무체재산권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권이 침해를 당할 시[31]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일반적인 재산권적 성질로부터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뿐만아니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8) 김주수, 앞의 책, 589면.

29)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대판1979.11.13, 79다483)

30) 대판 1979.11.13, 79다483, 대판1988.9.20, 86도628.

* 利得返還請求와 損害賠償請求間 比較

	이득반환 청구권(특허법내)	손해배상 청구권
요 건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법리상 불필요	귀책사유가 필요
목 적	불공정한 재산이동의 경우에 재산상태를 조정하여 회복하는데 있음	발생한 손해의 塡補
법적 효과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이 10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이 3년

권리침해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종래에는 연방대법원과 라이히 법원은 개별법의 규정에 근거한 열거주의원칙(Enumerationsprinzip)을 따랐지만, 특허법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방법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32]에 따라서 부당이득에 의한 이득반환청구권을 별도로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침해[33]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귀책사유없는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법리에 기한 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저작권법과 동일한 규정을 가진 의장권침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였고, 상표권의 침해의 경우에는 판결로서 그 이득반환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고의또는 과실 없이 타인의 무체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권리자[34]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간접적으로 권리침해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법이 외관상으로 개별주의에 입각한 法源에 따른 것이지만, 그 실체적으로는 특허권의 대상의 특수성인 독점적 배타권[35](우리 특허법 제94조, 제100조)과 이에 따른 사법정책과 관련되어 이

31) 초기 무체재산권의 권리주창자는 특허권등의 무체재산권의 법적 성질을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물권의 성질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준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에 기한 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손해배상방법에 따라 손해의 전보를 논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허발명은 유체물보다 침해가 용이한 반면에 침해여부를 밝히기는 곤란하므로 종래의 구제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피해구제와 침해억지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 특허법도 개정작업시에 종래의 손해배상방법이외에 침해자의 수익을 특허권자에게 반환시킴으로써 특허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독일 민법 제687조 제2항의 규정인 준사무관리에 기한 이익반환법리의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침해자의 수완에 의한 이득까지 반환하여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반박에 부딪쳤으며, 결국 일본특허법은 특허권자와 침해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한하여 민법에 관한 특칙으로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배대헌, 앞의 책, 85-87면.

32) 무체재산권이론 정립 초기에 Kohler가 주장한 것처럼 무체재산권이 유체물의 권리범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불명확하므로 선의의 무체재산권 침해자에게 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른다.배대헌, 특허권침해와 손해배상, 세창출판사, 1997.2, 193면.

3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법상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저작권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 1986년 개정이전의 저작권법 (즉, 1957년 저작권법) 제66조는 명시적으로 "善意이며 過失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이익을 받음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있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규정을 확인하는 의미 이상의 커다란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善意·無過失의 경우에 한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저작권침해로 인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론의 여지도 없다. (http://www.cpf.or.kr/cpf/study/dis027.htm)

34)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준 대가로 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 당시예정되거나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 사용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사례이다.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할 음악극의 주제곡을 작곡해 준 대가로 지급한 작곡료는 작곡의뢰극단이 그 음악극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 주제곡에 대하여 작곡을 의뢰할 당시 이미 예정되거나 또는 앞으로 그 공연을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향후 상당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재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재공연시 주제곡을 사용함으로써 선의, 무과실로 작곡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판 1994.12.9, 93다50321)

35) 일본특허법 제68조;…特許權者は業として特許發明の實施をする權利を專有する…', 미국특허법 제154조:Every patent shall contain a short title of the invention and a grant to the patentee , his heirs or assigns,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e inven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the invent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if the invention is a process , of the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using, offering for sale or selling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or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products made by that process, referring to the specification for the particulars thereof.', 독일특허법 제9조; '…Ilein der Patentinhaber…'

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우리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위법하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이용한 자의 수익에 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법리를 적용해서 이득반환법리를 허용하여도 양자에 대한 법이론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허권자의 이득반환청구시에 수익의 반환범위를 획정하는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문제가 있다.

저작권은 데이터베이스를 창작한 저자에게 적합한 형태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부정경쟁법이나 판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무허가 발췌나 재이용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조치를 필요로 한다[36].

물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편집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창작성의 요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어떤 의미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못한 실정이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외국 판례와 해석론을 볼 때 우리의 저작권법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것이다[37].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판매계약을 이용허락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부터 민법 뿐만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는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미국의 그것과 전혀 달라서 유사한 보호를 해주지 못할 것이므로 오히려 부당이득의 법리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만 하다. 발특9909

36) DB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의회와 집행위원회의 지침, 1996. 3. 11.
37)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정상조, 15면

한국발명진흥회 출판도서안내

구 분	도 서 명	체 제	발행처(저자)	가 격
발명도서	역사를 바꾼 세계적 발명 발견	국판, 185면	한국발명진흥회	5,000원
	21세기를 준비하는 지구촌	국판, 230면	한국발명진흥회	5,000원
	발명으로 꿈을 이룬 지구촌의 여성들	국판, 231면	한국발명진흥회(정영춘)	5,000원
산업재산권법 시리즈	산업재산권법령집(최근판)	국판,가제식, 1,600면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실비
	산업재산권법령집15추록	국판,가제식, 600면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실비
	중국특허법개설	국판, 463면	한국발명진흥회(유미특허)	12,000원
	중국상표법개설	국판, 260면	한국발명진흥회(유미특허)	8,000원
	북한산업재산권법	국판, 50면	한국발명진흥	3,000원
	러시아연방특허·상표법	국판, 110면	한국발명진흥회(송재욱)	4,000원
	캐나다 산업재산권법	국판, 164면	한국발명진흥회	4,500원
	상표등록조약(TRT)	국판, 135면	한국발명진흥회	4,000원

● 구입문의:정보지원팀 [02-557-1077(213)]